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규탄 기자회견 자료]

이명박 정부의 학생인권조례 흔들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은
학생인권과 학교 민주화에 대한 폭력이다!

일시: 2012년2월23일(수) 오전11시

장소: 교육과학기술부 (광화문정부종합청사)

주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인권을 위한 인천시민사회연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행복세상을 여는 교육연대

기자회견 진행 순서

사회: 권혜진(흥사단 교육운동본부)

규탄발언 ①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규탄발언 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탄발언 ③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성명서낭독

기자회견 자료 순서

3 ~ 4p 성명서

5p 참여 단체 안내

7~11p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이명박 정부의 학생인권조례 흔들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은

학생인권과 학교 민주화에 대한 폭력이다!

지난 2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두발·복장 제한, 소지품 검사 등을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학교에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교과부 스스로 ‘학생생활지도는 조례가 아니라 개별 학교에서 구성원의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어서 상위법인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번 시행령 개악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고 상위법 위반 논란을 증폭시키기 위한 정치적 꼼수에서 비롯됐다. 입법예고 후 교과부 관계자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시행령이 허용한 학칙을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제한하면 시행령 위반’이라며, 벌써부터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하는 발언들을 노골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이 같은 교과부의 행태는 어떠한 정당성도 없을 뿐더러, 전국적 제정 물결이 일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뒤흔들어 반인권적, 반민주적, 반교육적 교육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발악에 불과하다.

교과부는 경기, 광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의회를 통과하자 부교육감을 사주해 재의를 요구하도록 한 바 있고,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자 아예 두 팔 벗고 나서 무효확인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들고 나섰다. 입시경쟁으로, 폭력적 학교문화 속에서 희생된 학생들이 잇따라 죽음을 택하는 이 때, 인권적이고 평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도 모자란 이 때,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일에 교과부가 이토록 집착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학교 관리자들과 보수단체들에게 조례에 반기를 들 수 있는 법적 명분을 제공해주려는 저열한 속셈은 아닌가.

두발·복장규제는 학교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기는 하나, 이번 시행령이 통과 되면 학칙을 통한 두발·복장 규제가 최초로 합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이 체벌과 함께 대표적 학생인권 문제로 지적해왔던 문제가 바로 학생의 용모에 대한 부당한 규제였다. 특히 두발 규제는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 인식의 성장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져가고 있는 와중이다. 그럼에도 교과부가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시행령을 개악하려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조약과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인권 보장 의무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다. 게다가 교과부는 시행령의 내용이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개악을 획책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악안에는 ‘학칙 제·개정시 학생 의견의 수렴 방안을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과부 장관이 정한다’라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지난 2000년과 2005년, 두발 자유와 학생인권 보장을 향한 학생과 민주시민의 함성이 들불처럼 일어났을 때도 교과부(당시 교육부)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학칙을 개정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학생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바라보지 않고 학생인권에 관한 기본적 감수성도 없는 학교문화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시궁창에 처박히거나 ‘민주적 절차’로 위장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 인식되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칙을 만드는 과정에 학생을 들러리 세우는, 매우 비교육적인 일들이 학교현장에 되풀이되어 왔다. 반면,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칙을 통해서도 건드릴 수 없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 기준이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 절차가 학생의 정당한 권리로서 재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비로소 꽃피우기 시작한 학생인권과 학교 민주화를 ‘교과부 장관의 모호한 지시’로 퇴보시키려는 것은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보기 힘들다.

인권은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인 교과부가 보장하기 위해 애써야 할 핵심적인 가치이자 목표 중 하나이다. 또한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의 형성이야말로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마땅히 교과부의 역할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인권과 민주주의가 학교현장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과 법안을 다듬고 지원하는 일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요즘 입만 열면 학교폭력 근절을 근엄하게 외쳐대고 있는 교과부가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스스로 학생의 존엄과 학교 민주화를 거스르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번 시행령 개악 시도가 이주호 장관을 비롯한 교과부 관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인권과 교육자치를 훼손해온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민주시민의 선택을 받은 교육감 공약 사항으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통해 입법된 인권과 민주주의의 소산이다.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와 학교 민주화의 물결을 무력화하는 한편 민선 교육감의 권한마저 박탈하려는 것은 교과부와 이명박 정부의 치졸한 폭거임에 분명하다. 우리는 정당성도, 법적 근거도 없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과 학생인권조례 흔들기를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학생인권 보장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기본적 요구조차 교과부와 이명박 정부에게는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게 확실하다. 기본도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2012년 2월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인권을 위한 인천시민사회연대

:인천 YMCA,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참교육 학부모회 인천지부,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학부모모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 남동희망공간, 인천지역연대(민주노총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화학섬유노조인천지부, 민주택시인천본부, 건설노조인천지부, 보건의료노조인부천지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공공노조인천본부, 전교조인천지부, 언론노조인천일보지부, 대학노조인천권역연대, 운수공항항만운송본부, 운수버스경인본부, 현대제철지부, GM대우차지부, 가톨릭청년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노동자교육기관,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당인천시당,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사회당인천시당, 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 인천민주노동자연대,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연대, 인천지역교대위, 인천평통사, 인천통일연대,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진보신당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노동자센터, 통일아침, 다함께인천지회, 인천사노준, 전국노동자회인천위원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등 총 42개 단체),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경인여대교수협의회, 민주노총 인천본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회,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생활협동조합협의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모임, 청솔의집,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등 23개 단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 대학생 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모임,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행복세상을 여는 교육연대

:21C청소년공동체희망, 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다함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술단체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대학생연합,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참고자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2. 2. 16.

교육복지국
(학교문화과)

1. 제안이유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 학생자치활동, 학칙개정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생활규칙의 제정 근거를 두고자 함

또한,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학교장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습활동 보호, 학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감의 진단·상담·치유 지원 등을 의무화하고, 학생상담 등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칙 기재사항 구체화 (안 제9조제1항제8호)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규칙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함

나. 학생생활규칙 제정 근거 및 의견수렴 절차 명시 (안 제9조제4항, 제5항)

1) 학교의 장이 학칙을 개정할 경우, 안 제9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학교의 장은 학칙 제·개정시 의견수렴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포상·징계, 용모·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 학칙개정절차 등의 사항을 별도의 학칙인 학교생활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사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및 학내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5)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장의 법률에 보장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2) 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 보호, 학내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위 프로젝트 사업의 근거규정 및 동 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명시(안 제54조)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

생을 위해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2)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대상학교 선정기준 및 대상학생 선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1항제8호를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한다.

제9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4항의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를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로 한다.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의 의견수렴 대상이 되는 사항을 별도의 학칙(학생생활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5(학생 등의 권리보장)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에서 정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삭 제>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을 위한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p> <p>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 (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1-7호 생략)</p> <p><신 설></p> <p>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p> <p>9. 학칙개정절차</p> <p>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p> <p>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신 설></p>	<p>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p> <p>① ----- ----- ----- -----.</p> <p>(1-7호 생략)</p> <p>8. <u>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u></p> <p>9-11호는 현행 8-10호와 같음.</p> <p>④----- <u>제10호</u> ----- ----- ----- --<u>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u>-----</p> <p>⑤ <u>학교의 장은 제4항의 의견수렴 대상이 되는 사항을 별도의 학칙(학생생활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u></p> <p>⑥ <u>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u></p>
<p><신 설></p>	<p>31조의5(학생 등의 권리보장)</p> <p>① <u>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에서 정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u></p> <p>② <u>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에</u></p>

	<p><u>따라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u></p>
<p>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p> <p>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p> <p>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p> <p>① ~ ③ 생략</p> <p>④ <삭 제></p> <p><u>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을 위한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u>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u></p>